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1995.1.1)되었으나,

나. 상위법 근거 없는 임의조례로 「구미시 특별농공지구 관리조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적용으로 현행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라. 기 타 :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정) 1995.01.01 조례 제74호
(일부개정) 1997.10.21 조례 제279호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시설의 명칭은 해평, 산동, 고아농공지구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공동이용시설은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18, 해평면 월호리 328-1, 산동면 동곡리 675-2 (농공지구)에 둔다. (개정 1997.10.21)

제3조(기능)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항 및 각호의 기능으로 사용 및 활용한다.

①임대시설

1. 금융시설
2. 슈 퍼
3. 이 용 실
4. 미 용 실
5. 약 국
6. 식 당
7. 휴 게 실
8. 기 타 : 영리목적시설

②무상대여시설

1. 경비실 및 숙직실
2. 관리사무실
3. 회의실 및 독서실
4. 준비실
5. 전시실
6. 탁아소
7. 기 타 : 비영리시설

③전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면적을 임대 및 무상대여할 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무상대여 공동시설(계약서 별지제1호서식)은 ○○농공지구 임주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 에 위탁관리하고 임대영리시설(점포)은 임대계약【별지제2호서식】 , 【별지제3호서식】 에 의거 사용자에게 관리토록 한다.
②협의회에서는 관리인 약간명을 두고 공동 이용시설과 지구내 기반시설 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③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기간은 무상대여 공동시설은 3년간으로 하고, 임대시설(점포)은 2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비영리 공동시설은 무상으로 협의회에 대여하고, 영리시설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단, 초년대부료는 투자된 건축비 100분의 10으로 산정한다.

제6조(영리시설의 임대방법) 시설(건축물)용도별로 공개시설 경쟁에 의거 사용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영리목적의 시설물전체협의회에서 임대를 희망할 경우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불허 및 정지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직권으로 사용조건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사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건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계약조건 및 규정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제8조(설비) ①사용자가 특별히 별도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설비는 사용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전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동이용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 하였을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조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토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상당액의 담보물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양도,전매의 금지) ①공동이용시설을 사용코자 임대계약을 체결한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직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74호, 1997.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투자통상과
입 안 자	과 장	김 홍 태
	담 당	전 명 희
	담 당 자	박 미 라 (480-6033)